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마을 신사2동!

2022년

# 신사2동 주민자치회 자치활동 결과 보고서



신사2동 주민자치회



# 2022년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보고서

## 목차

---

인사말	02
1. 신사2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04
2. 신사2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05
3. 신사2동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	06
4. 2022년 신사2동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사진	07
5. 2022년 신사2동 주민자치회 하반기 감사보고	11
6. 2023년 신사2동 주민자치회 회계현황 자료	14
7. 2022년 신사2동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보고	16
8. 2022년 신사2동 주민총회 결과보고	27
9. 은평구 신사2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34
[별첨1]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42

---

안녕하세요?  
신사2동 주민자치회  
회장 박은미입니다.



2022년 한 해는 2021년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업 실행과 2023년도 의제 발굴 및 주민총회로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통장단, 각종 직능단체 회원분들 그리고 신사2동 직원 및 주민분들과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열정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사2동 주민자치회는 늘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12월 30일

신사2동 주민자치회 회장 박은미



안녕하세요?  
신사2동장 임춘재입니다.



소통과 협동으로 주민자치의 동력을 만들고 기틀을 잡아준 신사2동 주민자치회 1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서 보다 쾌적하고 행복한 신사2동을 만들기 위해 제안하신 여러 의제들이 1년 동안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 그리고 성의에 감동받았습니다. 가깝기에 친숙한 우리의 공동체가 곧 주민자치의 시작이며 그 중심에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신사2동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였기에 우리 동을 한결음 더 성장시켜 지금보다 더 멋진 동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역시 동장으로서의 첫 부임지가 신사2동이어서 많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동 주민자치회의 활기차고 무한한 발전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신사2동 동장 임춘재



# 1 신사2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 2 신사2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주민자치력 강화를 통해 민관 협력적 사회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을 주민과 행정이 함께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문화를 통해 마을의 개선하고 싶은 사항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 결정,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사2동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 | 주민자치회 위원 : 48명 (2022. 12. 15.기준)

계	성 별(명)		연 령 별(명)		단체 · 개인 별(명)	
	남	여	40대 이하	40대 이상	단체	개인
48	20	28	5	43	17	31

### | 주민자치회 운영진 현황 (2022. 12. 15.기준)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사무국장	분과장
박은미	한종택	이병호 이정훈	조규태	이은숙	서미정, 김기숙 이재현, 신정희

### |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 현황 (2022. 12. 15.기준)

분과명	분과장/분과총무	위원	분과원	주요업무
공간운영 분과	서미정/이정진	김무빈, 김은희 김재택, 박기철 박정희, 안종배 이병호, 이현두	배영숙	비단뜨락 카페와 모두의 공간운영, 자치회관 프로그램 기획 등
마을가꾸기 분과	김기숙/양명희	박춘희, 송숙영 이정훈, 정정연 정찬일, 제남국 한종택, 홍광주	고웅, 권영옥 서명현, 이정화 이준덕, 진정임 채경녀	마을을 가꾸고 알리기, 산새마을 텃밭 운영 등
건강복지 분과	이재현/이선자	강선엽, 김옥자 노공명, 박경준 안정옥, 윤진희 이근수, 임현심 정유진, 정희정 한승훈	박현숙	모두의 건강을 챙기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교육문화 분과	신정희/전지영	김혜영, 박세현 배경임, 배석술 서동기, 오동주 이경분, 이연옥 이혜용, 천선우	이경옥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참여자를 고려한 교육과 문화 기획 등

### 3 신사2동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

시 기	운영내용	세부 운영 내용
2022. 1~12	정기회의 및 운영진회의	- 2022년 사업계획 공유 및 논의 - 정기회의 (ZOOM화상회의 6회, 대면 5회) - 운영진회의 10회 진행
2022. 2~4	운영세칙 개정 등	- 2월 : 세칙개정준비위원회 구성 - 3월 25일 : 세칙개정준비위원회 1차회의 - 4월 : 정기회의에서 운영세칙 개정안 최종승인
2022. 3~5	2023년 마을의제 발굴 2022년 분과사업 실행	- 3월 14일 : 의제 상상워크숍 개최 - 3월 29일 : 참여예산 주민제안 컨설팅
2022. 6.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주민자치회비로그 공모전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 6월 7일 : 역량강화 의제발굴 워크숍 - 6월 16일 : 비로그심사위원회 구성 - 6월 22일 : 총회준비위원회 13명 구성
2022. 7.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회의등	- 7월 5일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1차회의 - 7월 15일 : 주민자치회 비로그 선정 - 7월 19일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2차회의 - 8월 22일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3차회의
2022. 8~9	2022년 주민총회 등	- 8월 16일 주민총회 공고문 게시 - 8월 29~9월12일 사전투표시작 - 9월 16일 주민총회 개최
2022. 9.	2022년 마을의제 선정	- 편백나무 숲 힐링프로그램 운영 - 봉산, 불광천 바른 자세로 함께 걷기 프로젝트 - 사랑의 도시락 - 어두운 골목길 밝히는 LED 벽화 만들기 - 우리 마을 누구나 스타 - 신사동 우리 마을 작은 음악회 -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 “꿈나무 교실” - 다시 태어나는 신사2동 어르신 프로젝트
2022. 10.	분과 사업 진행 2기 신규 위원 모집	- 각 분과 사업 진행 - 10월 31일 : 위원선정관리위원회 1차회의 - 12월 6일 : 위원선정관리위원회 2차회의
2022. 11.	분과 사업 진행 연임 교육진행	- 11월 12일, 22일 : 연임위원 연임교육 - 각분과 사업 진행
2022. 12.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 12월 13일 : 2022. 주민자치회 성과보고회 및 정기회의 - 각 분과사업 마무리 - 2기 신규위원 구성

## 4 2022년 신사2동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 사진



2022.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전달식



분과회의



2021 하반기 감사 실시



민관협력회의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정기회의

## 2022년 신사2동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 사진



비단뜨락 오픈 행사



희망은돌 따뜻한 겨울나기



이제발굴촉진 양성과정 교육



의제 상상 워크숍



장수경로당 봉사활동



주민의제 제안하기

## 2022년 신사2동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 사진



사랑의 명절음식 나눔행사



2022. 강원 산불 피해 지원 성금 전달식



신사 제2동 로고 공모전



사랑벌레 방역



산새마을 초록학교



산새마을 초록학교

## 2022년 신사2동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 사진



어울림 한마당



어울림한마당 퍼레이드



의제발굴 역량강화 워크숍



의제발굴 역량강화 워크숍



2기 연임교육



주민총회

## 5 신사2동 주민자치회 2021년하반기 감사보고

### | 신사2동 주민자치회 감사자료

운영기간 : 2021. 6. 24 ~ 2021. 12. 31

#### 1. 보조금 2021년 결산 총괄표

구분	세목	수입액	지출액	잔액	비고
주민자치회 사업	간사활동비	10,000,000	10,000,000	0	
	운영비	12,000,000	8,741,830	3,258,170	
	사업운영비	3,000,000	2,835,270	164,730	2020.이월예산
	합계	25,000,000	21,577,100	3,422,900	

#### 2. 보조금 2021년 총계원장

계정과목		수입	지출	잔액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380,000	397,960	-17,960
	공공운영비	400,000	430,470	-30,470
	업무추진비	800,000	739,700	60,300
분과구성운영 및 자치계획수립	사무관리비	280,000	325,200	-45,200
	행사실비보상금	2,060,000	674,000	1,386,000
주민총회	사무관리비	4,060,000	4,064,010	-4,010
	행사실비 보상금	1,240,000	244,000	996,000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1,820,000	1,820,000	0
	행사실비 보상금	960,000	46,490	913,510
사업운영비		3,000,000	2,835,270	164,730
주민자치회 운영 총계		15,000,000	11,577,100	3,422,900
간사활동비		10,000,000	10,000,000	0

2022. 1. 14.

담당자 주민자치회 간사 성명 조규태  
확인자 주민자치회 회장 성명 박은미

## | 감사 개요

근 거 : -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 신사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4조

감사일시 : 2022. 1. 14. 11:00

감사장소 : 신사2동 주민센터 2층 모두의 공간

감 사 자 : 이정훈 회계감사, 이병호 사업감사

## | 감사 내용

### 1. 사업 부문 주민자치회 사업 및 운영 내역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운영 양호함
2	주민총회	성황리에 진행함
3	주민총회 결과 정리와 주민공유	코로나 펜데믹으로 주민공유는 미약함
4	실행을 위한 분과 재정비	논의중
5	사업평가와 사업계획	소기의 목적 달성함
6	역량강화워크숍 진행	양호함
7	정기회의의 민주적 운영	양호함
8	각종 회의(분과회의, 사무국회의, 민관협력회의, 임원진 또는 운영위위원회의) 운영의 적정성	양호함



## 2. 회계 부문 주민자치회 예결산 및 회계 처리 과정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예산집행은 이상없이 진행되었음
2	주민자치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목적외 사용은 없었으며 모든예산이 의결에 의해 진행됨
3	주요 회계장부 비치 및 통장잔액 일치 여부	주요 지출결의서 이상없이 진행됨
4	수입원, 지출원 지정 여부, 신용보증보험 가입 여부	이상없이 진행됨
5	자치회관 수입 등 유료 프로그램의 수입 누락계상 여부, 영수증 발급의 적정성 확인	2001년 유료프로그램 없었으며 기타사항 이상 없음
6	지출서류(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매 항목마다 지출증빙는 건별로 처리됨. 추후 총괄표로 점검이 효과적이라 판단됨
7	예산의 허위성 지출 여부	예산의 허위성 지출은 없음
8	급여 및 활동비 지급의 적정성	급여 및 활동비는 의결사항에 따라 이상 없이 지급되었음
9	소득세, 주민세의 원천징수 이행 여부	소득세 주민세 이상없이 이행됨
10	근무시간에 따른 간사활동비 지급의 여부 (기타소득세 납부여부)	이상없음

## 3. 행정 서류와 각종 문서, 장부 및 직인 관리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정기회의, 분과회의, 운영진회의 회의록 비치	이상없이 관리됨
2	주민자치회 위·해촉 사임대장	향후 유·무선 전자문서로 증빙인정 필요 사업시 실무자의 협조요청의 어려움 발생
3	직인대장과 문서대장	이상없음
4	직인의 보관관리	주민자치 사무실에 이상없이 관리됨
5	세무서 고유번호증 보관관리	사무실에 비치 보관됨
6	사업계획서 및 사업운영 필요서류	이상없음
7	연1회 재물조사 실시 여부, 조사표 부착여부	이상없음

## 4. 감사 총평

**사업감사** : 코로나 상황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의제 발굴하여 나름대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었음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감사** : 주민자치회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각 항목별 증빙과 예산 집행의 근거에 따라 명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 6 2022 신사2동 주민자치회 회계현황

### ① 운영비(사업비, 간사활동비, 사무국장활동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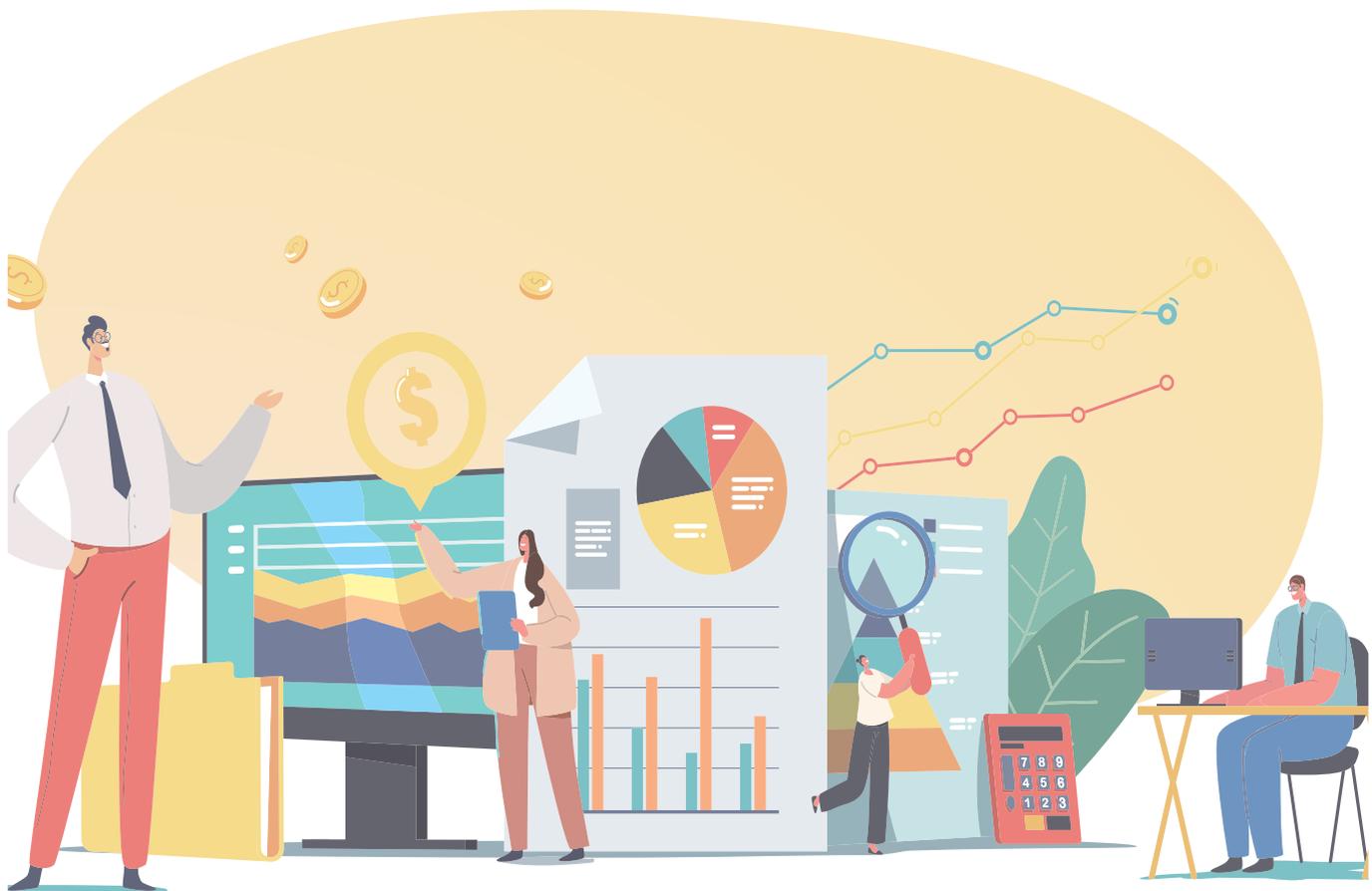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개요	추진결과
사업비 6,000원	2~12월	- 주요내용 :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 장 소 : 신사2동 주민센터 2층사무실 - 실행주체 : 신사2동 주민자치회	상반기 교부
간사활동비 14,400천원	1~12월	- 주요내용 : 간사 활동비 - 장 소 : 신사2동 주민센터 2층사무실 - 실행주체 : 신사2동 주민자치회	상반기 교부
사무국장활동비 14,000천원	6~12월	- 주요내용 : 사무국장 활동비 - 장 소 : 신사2동 주민센터 2층사무실 - 실행주체 : 신사2동 주민자치회	6월 교부

### ② 실행사업(시구 단위 참여예산)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개요	추진결과
쓰레기 무단투기CCTV 25,000천원	3월~11월	- 주요내용 : CCTV 설치 - 장 소 : 신사2동 인근지역 - 실행주체 : 자원순환과	신사2동 300-115에 5대 설치
행복한 부모학교 9,340천원	3월~12월	- 주요내용 : 부모와 자녀의 소통 교육 - 장 소 :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 실행주체 : 교육문화분과	6월~10월까지 17회차 진행
다함께 차차차 4,480천원	6월~11월	- 주요내용 : 제철차 나눔 - 장 소 : 신사2동 주민센터 2층 - 실행주체 : 공간운영분과	6월~12월까지 4회차 진행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동교육 5,000천원	3월~11월	- 주요내용 : 소외된 아이들의 교육기회 제공 - 장 소 : 신사2동 일대 2곳 - 실행주체 : 교육문화분과	9월~11월 각 10회차 진행
따뜻한 건강마을 신사2동 20,000천원	3월~11월	- 주요내용 : 건강한 마을의 삶 기획 - 장 소 : 신사2동 일대 - 실행주체 : 건강복지분과	9월~12월 총 4가지 사업진행
전래놀이 어울마당 2,000천원	3월~11월	- 주요내용 : 초등대상 고유 전통놀이 전수 - 장 소 : 관내 초등학교 - 실행주체 : 교육문화분과	10월~11월 7회차 진행

### ③ 주민활동 실행사업(주민세 균등분)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개요	추진결과
의제개발비 12,000천원	3~12월	- 주요내용 : 의제개발, 주민총회 - 장 소 : 신사2동 관내 - 실행주체 : 신사2동 주민자치회	의제발굴 워크숍(6월7일) 주민총회(9월16일) 성과공유회(12월13일)
해바라기 바람개비 프로젝트 13,557천원	3~12월	- 주요내용 : 마을 가꾸기 - 장 소 : 신사2동 인근지역 - 실행주체 : 신사2동 주민자치회	4월~12월까지 총 6회 진행함
우리마을 누구나 스타 9,206천원	3~11월	- 주요내용 : 월단위 마을 문화 행사 - 장 소 : 신사2동 주민센터 - 실행주체 : 신사2동 주민자치회	상반기에 코로나와 선거 하반기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으로 미실행



## 7 2022년 신사2동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보고

### | 서울시 참여예산 활동사업

따뜻한 건강마을 신사2동

- 예산 : 12,500천원

- 실행분과 : 건강복지분과

- 사업내용 :

- 4050 중년들의 마을 속 네트워크 형성, 집수리 봉사,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삶의 활력을 증진 시키고 봉사활동으로 마을 발전에 기여
- 10대 줍깅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지역 명소 탐방 및 지역 문화를 배우고 마을을 가꾸고 사랑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



### - 활동 사진 -



| 은평구 동 참여예산 활동사업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동교육

- 예산 : 5,000천원

- 실행분과 : 교육문화분과

- 사업내용 :

- 신사2동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정 아동 대상으로 생각하는 힘과 글로벌 소통의 힘을 키우는 교육기회 제공



- 활동 사진 -



## | 은평구 동 참여예산 활동사업

### 행복한 부모학교

- 예산 : 9,340천원

- 실행분과 : 교육문화분과

- 사업내용 :

-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가정 자녀교육이 축소된 상황에서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와의 소통증진 및 올바른 학습방법 지원

## - 활동 사진 -



## | 은평구 동 참여예산 활동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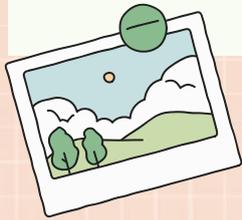
신나는 전래놀이 한마당

- 예산 : 2,000천원

- 실행분과 : 교육문화분과

- 사업내용 :

- 고유의 전래놀이를 통해 우리 조상의 얼과 슬기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의 팀워크 강화 및 사회성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 - 활동 사진 -



## | 은평구 동 참여예산 활동사업

### 다함께 차차차

- 예산 : 4,480천원

- 실행분과 : 공간운영분과

- 사업내용 :

- 주변 이웃들과 함께 계절 과일청 및 차를 담그는 행사를 통해 주민들간 소통 및 협동정신 제고
- 결과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으로서 상생하는 따뜻한 마을 가꾸기

## - 활동 사진 -



## |은평구 동 참여예산 활동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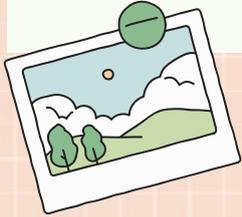
### 쓰레기 무단투기 CCTV

- 예산 : 25,000천원

- 실행분과 : 마을 가꾸기

- 사업내용 :

- 집앞 골목골목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CCTV를 설치해서 우리 동네 거리를 깨끗하게



## - 활동 사진 -



설치 전



설치 후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해바라기 바람개비 프로젝트

- 예산 : 13,55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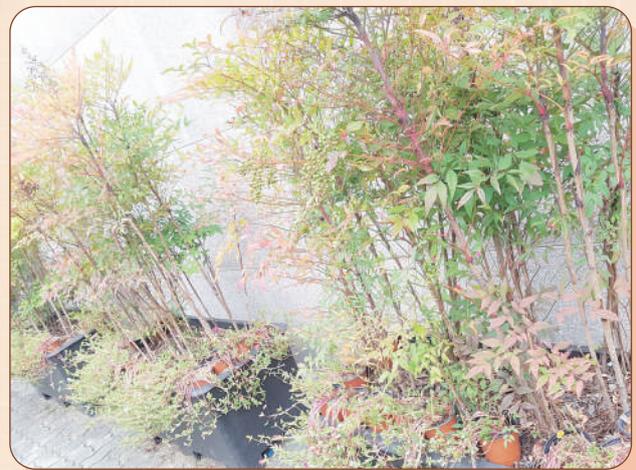
- 실행분과 : 마을가꾸기 분과

- 사업내용 :

- 총 7회차 진행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봉산, 산새마을 텃밭 등에 해바라기와 바람개비 구간 만들기
- 화단 조성과 계절에 맞는 꽃 식재



- 활동 사진 -



##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 우리마을 누구나스타

- 예산 : 9,206천원

- 실행분과 : 마을가꾸기 분과

- 사업내용 :

■ 코로나 19로 신사2동 이웃 간 감소한 소통의 기회 증대

■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하여 그림, 시, 장기자랑 영상등 개인의 이야기가 담긴 콘텐츠 접수받아 진행하려 했으나 상반기에는 코로나 19 확산과 선거로 인해 진행 못함. 하반기에는 일부 접수를 받았으나 신청 인원이 적고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에 따른 미실행



## 2022년 동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보고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구비	시비	계
합 계		83,220	44,263	127,483
주민 자치 시범사업	간사활동비	11,400	3,000	14,400
	사무국장 활동비	14,000		14,000
	주민자치회 사업비		6,000	6,000
주민세 균등분	의제개발비	12,000		12,000
	해바라기 바람개비 프로젝트		13,557	13,557
(시) 참여 예산	우리 마을 누구나 스타		9,206	9,206
	따뜻한 건강마을 신사2동		12,500	12,500
(구) 참여 예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동교육	5,000		5,000
	신나는 전래놀이 어울마당	2,000		2,000
	다함께 차차차	4,480		4,480
	행복한 부모학교	9,340		9,340
	쓰레기 무단투기 CCTV	25,000		25,000

## 보조금 2022년 예산 내용

### 1. 주민자치회 사업운영비 집행현황 (12월30일 기준)

(단위: 원)

연번	교부일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사업명	예산액			
	총계	34,400,000	34,160	240	
1	운영사업비	6,000,000	5,760	240	
2	간사활동비	14,400,000	14,400	0	
3	사무국장활동비	14,000,000	14,000	0	

### 2. 주민세 균등분 사업비 집행현황 (12월30일 기준)

(단위: 원)

연번	교부일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사업명	예산액			
	총계	34,763,000	25,570,360	9,192,640	
1	의제개발비	12,000,000	11,619,110	380,890	
2	해바라기바람개비프로젝트	13,557,000	13,507,250	49,750	
3	우리마을 누구나스타	9,206,000	444,000	8,762,000	

### 3. 시 참여예산 사업 운영비 집행 현황 (12월30일 기준)

(단위: 원)

연번	교부일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사업명	예산액			
	총계	12,500,000	12,174,590	325,410	
1	따뜻한 건강마을 신사2동	12,500,000	12,174,590	325,410	

#### 4. 구 참여예산 사업 운영비 집행 현황 (12월30일 기준)

(단위: 원)

연번	교부일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사업명	예산액			
	총계	45,820,000	44,914,140	905,860	
1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동교육	5,000,000	4,106,750	893,250	
2	신나는 전래놀이 어울마당	2,000,000	1,987,580	12,420	
3	다함께 차차차	4,480,000	4,479,810	190	
4	행복한 부모학교	9,340,000	9,340,000	0	
5	쓰레기 무단투기 CCTV	25,000,000	25,000,000	0	



## 8 주민총회 결과보고

### | 총회준비위원회

2022년  
3월 14일

#### 의제상상워크숍 진행

- 참여자 : 신사2동 주민자치 위원
- 개요 : 오프라인 위주의로 화상회의를 통한 온라인 병행 교육으로 2023년 의제개발을 위한 사례 위주의 교육 진행

2022년  
3월 29일

#### 참여예산 주민제안 컨설팅 진행

2022년  
6월 7일

#### 역량강화 의제발굴 워크숍

- 장소 : 일영 그린랜드
- 참여자 : 신사2동 주민자치 위원, 분과원 및 관계 공무원, 동자치지원관
- 개요 : 2023년 의제 구상 및 제안서 작성 실습, 의제실행을 위한 위원의 역량강화 교육,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자치위원, 분과원의 친선도모

2022년  
6월 12일

#### 총회준비위원회 13명 구성

(김기숙, 김무빈, 김혜영, 박경준, 박은미, 배경임, 이선자, 이은숙, 이재현, 전지영, 정희정, 조규태, 천선우)

- 1차 총회준비위원회 (7월 5일) :
  - 총회준비위원회 운영 : 박은미
  - 회의내용 : 주민총회 일정, 주민총회 공고, 정족수 확인등 총회준비 세부 내역 논의
- 2차 총회준비위원회 (7월 19일) :
  - 총회준비위원회 운영 : 박은미
  - 회의내용 : 총회 장소, 주민총회 방식, 투표방식, 홍보방법, 홍보 영상 제작, 답례품, 사전 공연등 세부 일정 및 내역 논의
- 3차 총회준비위원회 (8월 22일) :
  - 총회준비위원회 운영 : 박은미
  - 회의내용 : 홍보물 제작관련 결정, PPT 제작논의, 사전투표 QR코드 링크 답례품 결정, 축하공연 결정, 식순 수정 등 세부 논의 및 결정



2022년  
8월 29일  
~ 9월12일

### 사전투표 진행

- 사전투표 작업 :

- 온라인 투표 : QR 코드 접속
- 거점 투표소 설치 : 신사2동 주민센터, 신사 노인복지관,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새절역사 등
- 정족수 : 2022년 8월 말 인구 19,619명 기준 0.5% 이상 (99명)
- 사전 투표 참여인원 : 주민1,223명

2022년  
주민총회  
투표 결과

### 투표 결과 ( 총참여인원:1,288명, 무효표: 38표, 총득표수: 1,250 )

은평구 (구) 참여예산					
연번	사업명	예산	총 득표수	순위	득표율
1	편백나무 숲 힐링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716	1	19%
2	봉산, 불광천, 바른자세로 함께 걷기 프로젝트	1,400만원	471	4	13%
3	사랑의 도시락	950만원	501	3	14%
4	어두운 골목길 밝히는 LED벽화 만들기	2,000만원	633	2	17%
5	우리마을 누구나 스타	850만원	131	8	4%
6	신사동 우리마을 작은 음악회	2,000만원	357	7	10%
7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 "꿈나무 교실"	1,300만원	439	6	11%
8	다시 태어나는 어르신 프로젝트	500만원	459	5	12%
총 득표수			3,707		

서울형 주민활동 지원사업					
연번	사업명	예산	동의	비동의	득표율
1	마을에서 같이 살기	400만원	1202	48	96%
총득표수			1,250		
2	산새마을 초록학교 도시농부	200만원	1171	79	94%
총득표수			1,250		

## OMR 투표용지 시안

No. 2,000

### 2023. 신사2동 (구)참여예산 및 선정 투표 용지

- (구)참여예산 1억원, 서울시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

[ 우선순위 3개 선정 투표 ]

분야	연번	2023년 신사2동 주민제안 마을사업 제안	예산 [만원]	기표란 [●] 채용
(구) 참여예산	1	편백나무 숲 힐링 프로그램 운영	1,000	<input type="radio"/>
	2	봉산, 불광천 바른자세로 함께 걷기 프로젝트	1,400	<input type="radio"/>
	3	사랑의 도시락	950	<input type="radio"/>
	4	어두운 골목길 밝히는 LED 벽화 만들기	2,000	<input type="radio"/>
	5	우리 마을 누구나 스타	850	<input type="radio"/>
	6	신사동 우리 마을 작은 음악회	2,000	<input type="radio"/>
	7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 "꿈나무 교실"	1,300	<input type="radio"/>
	8	다시 태어나는 신사2동 어르신 프로젝트	500	<input type="radio"/>

분야	연번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예산 [만원]	기표란 [●] 채용
서울시 주민자치 지원사업	1	마을에서 같이 살기	400	<input type="radio"/> 동 의 <input type="radio"/> 비동의
	2	산새마을 초록학교 도시농부	200	<input type="radio"/> 동 의 <input type="radio"/> 비동의

* 귀하는 위 주민총회 상정된 자치계획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사업 실행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radio"/> 동 의 <input type="radio"/> 비동의
* 개인정보이용동의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나이, 주소 - 수집목적 : 2023. 참여예산 마을의제 선정 투표 및 주민총회 관련 자료 - 보유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3개월이내 파기	<input type="radio"/> 동 의 <input type="radio"/> 비동의

[아래 양식에 하나라도 기입하지 않은 경우 무효표 처리함]

이 름	성 별	남 ○	여 ○
전화번호	010 - - (※ 휴대폰 번호가 틀릴 경우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생년월일			
주 소			
【은평구 신사2동 소재】 거주자 ○ 직장(사업장)종사자 ○ 지역단체소속(생활) ○			
17세 ~ 19세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 2022년 8월16일 신사2동 19,619명 인구 기준, 99명(0.5%) 이상의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선정 ※ 최종결과발표: 9월 16일(금) 신사2동 주민총회 / 신사2동 주민센터 게시판 홍보 ※ 세부 계획 작성 시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를 통해 예산 조율 가능			

# 홍보물

주인이 주인인 행복마을 신사2동

## 제2회 신사2동 주민총회

2022년 9월 16일 14:00  
은평신협 본점 6층 나비채움

**사전투표**  
2022. 8. 29. (월) ~ 9. 12. (월)  
투표대상 : 신사2동 거주주민, 생활주민 (만 17세 이상)  
투표방법 :  QR코드 접속

**현장투표**  
2022. 9. 16. (금) 14:00  
은평신협 본점 6층 나비채움  
※ 투표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경품지급

신사2동 주민자치회 ☎ 02-3151-0343, 0344

# 주인이 주인인 행복마을 신사2동

신사2동 주민자치회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 여러분께서 직접 결정해주세요!

1. 2023년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추진안 2건 4건)	4. 신사2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신사2동 주민총회, 주민총회, 주민총회 등 주민총회 운영 방안 연구
2. 신사2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운영 방안 연구 신사2동 주민총회 운영 방안 연구, 주민총회 운영 방안 연구	5. 신사2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운영 방안 연구 신사2동 주민총회 운영 방안 연구, 주민총회 운영 방안 연구
3. 신사2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운영 방안 연구 신사2동 주민총회 운영 방안 연구, 주민총회 운영 방안 연구	6. 신사2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운영 방안 연구 신사2동 주민총회 운영 방안 연구, 주민총회 운영 방안 연구

항목	시간	내용
사전투표	2022. 8. 29. (월) ~ 9. 12. (월)	신사2동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추진안 2건 4건) 투표
현장투표	2022. 9. 16. (금) 14:00	신사2동 주민총회

신사2동 주민자치회 (문의: 02-3151-0343, 0344)

# 2022 제2회 신사2동 주민총회

2022년 9월 16일 14:00 | 은평신협 본점 6층 나비채움 | 신사2동 주민자치회

주인이 주인인 행복마을 신사2동

## 제2회 신사2동 주민총회

2022년 9월 16일 14:00 | 은평신협 본점 6층 나비채움

**사전투표**  
2022. 8. 29. (월) ~ 9. 12. (월)  
투표대상 : 신사2동 거주주민, 생활주민 (만 17세 이상)  
투표방법 : QR코드 접속

**현장투표**  
2022. 9. 16. (금) 14:00  
은평신협 본점 6층 나비채움  
※ 투표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경품지급

신사2동 주민자치회 (문의: 02-3151-0343, 0344)

<p>주인이 주인인 행복마을 신사2동</p> <h3>2022 제2회 신사2동 주민총회</h3> <p>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추진안 2건 4건) 투표</p> <p>1. LED 조명 교체 2. LED 조명 교체 3. LED 조명 교체 4. LED 조명 교체</p>	<p>주인이 주인인 행복마을 신사2동</p> <h3>2022 제2회 신사2동 주민총회</h3> <p>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추진안 2건 4건) 투표</p> <p>5. 우리마을 누르스라 6. 우리마을 누르스라 7. 우리마을 누르스라 8. 우리마을 누르스라</p>	<p>주인이 주인인 행복마을 신사2동</p> <h3>2022 제2회 신사2동 주민총회</h3> <p>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추진안 2건 4건) 투표</p> <p>9. 신사2동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10. 신사2동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11. 신사2동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12. 신사2동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p>	<p>주인이 주인인 행복마을 신사2동</p> <h3>2022 제2회 신사2동 주민총회</h3> <p>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추진안 2건 4건) 투표</p> <p>13. 소중민 어린이를 위한 교육 14. 소중민 어린이를 위한 교육 15. 소중민 어린이를 위한 교육 16. 소중민 어린이를 위한 교육</p>	<p>주인이 주인인 행복마을 신사2동</p> <h3>2022 제2회 신사2동 주민총회</h3> <p>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추진안 2건 4건) 투표</p> <p>17. 다시마을은 신사2동 어른친 프로그램 18. 다시마을은 신사2동 어른친 프로그램 19. 다시마을은 신사2동 어른친 프로그램 20. 다시마을은 신사2동 어른친 프로그램</p>	<p>주인이 주인인 행복마을 신사2동</p> <h3>2022 제2회 신사2동 주민총회</h3> <p>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추진안 2건 4건) 투표</p> <p>21. 마을배달이 샅기 22. 마을배달이 샅기 23. 마을배달이 샅기 24. 마을배달이 샅기</p>	<p>주인이 주인인 행복마을 신사2동</p> <h3>2022 제2회 신사2동 주민총회</h3> <p>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추진안 2건 4건) 투표</p> <p>25. 신사2동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26. 신사2동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27. 신사2동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28. 신사2동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p>	<p>주인이 주인인 행복마을 신사2동</p> <h3>2022 제2회 신사2동 주민총회</h3> <p>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추진안 2건 4건) 투표</p> <p>29. 신사2동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30. 신사2동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31. 신사2동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32. 신사2동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p>	<p>주인이 주인인 행복마을 신사2동</p> <h3>2022 제2회 신사2동 주민총회</h3> <p>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추진안 2건 4건) 투표</p> <p>33. 신사2동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34. 신사2동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35. 신사2동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36. 신사2동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p>	<p>주인이 주인인 행복마을 신사2동</p> <h3>2022 제2회 신사2동 주민총회</h3> <p>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추진안 2건 4건) 투표</p> <p>37. 신사2동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38. 신사2동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39. 신사2동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 40. 신사2동 주민자치회 동 참여예산 사업</p>
---	---	--	---	---	---	---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제2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2022-5호

## 신사2동 제2회 주민총회 개최 공고

「주민이 주인인 행복마을 신사2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와 「신사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사2동 제2회 주민총회』를 개최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주민총회 개최 개요

- 일시 :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
- 장소 : 은평 신희 본점 6층 나비채홀
- 보고사항
  - 2021년 하반기 사업 / 결산 보고
  - 2022년 신사2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보고
  - 2022년 주민자치회 사업 및 현황 보고
- 의결사항
  - 2023년 은평구 참여예산 등 지역사업 결정
  - 2023년 서울형 주민자치활동지원 사업 결정

\* 2022년 8월 기준, 의결 정족수는 동 인구의 0.5% 이상으로 한다.

### 2. 투표인

- 신사2동 거주 주민 및 직장/사업/활동을 하는 17세 이상의 주민

### 3. 결과보고 : 주민총회 개최 결과는 은평구청 및 동 게시판에 보고

### 4. 기 타

- 위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신사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함.

### 5. 문의사항 : 신사2동 주민자치회 (☎ 02-3151-0344)

2022년 8월 16일

신사2동 주민자치회장



## 2022 주민총회



## 2022 주민총회 사전투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운영세칙 초안 준비	2021. 2. 2. 제1차 운영세칙준비위원회
	2021. 2. 16. 제2차 운영세칙준비위원회
운영세칙 검토 및 의결	2021. 3. 23. 제1차 정기회의
운영세칙 개정 초안 작성	2022. 3. 25 제1차 운영세칙개정준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검토 및 의결	2022. 4. 15. 제13차 정기회의

2021. 4. 15

신사2동 주민자치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신사2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신사2동 주민자치회는 동 지역사회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조직이다.

##### 제3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신사2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신사2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 제5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6조(운영원칙)

① 제5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 ②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③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 ④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 ⑤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자치회관 운영 등 동 행정사무 위탁·수탁 처리
- ⑥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 제 2 장 주민자치회

### 제8조(주민자치회 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대표조직이다.

### 제9조(위원)

- ①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과 선정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 “조례”라고 한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공고와 인적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주민자치회 위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조례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하되 예비후보자의 순위가 없는 경우, 연 1회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 ④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1. 조례 제12조(위원의 의무)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연간 3회) 및 분과회의(연간 5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사전 통보 연간 1회 시 예외로 인정한다.
  - 3.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4.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 5.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여 현저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 6. 주민자치회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촉을 결의하고,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촉을 결의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해촉 절차와 방법은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11조(사임 및 해임)

- ① 운영진,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 또는 운영진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 제출 익일부터 사임한 것으로 한다. 단, 사임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본인의 의사임을 증명하면 사임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제12조 (운영진 임기)

- ① 주민자치회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운영진을 둔다.
-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한다) 1명
  2. 주민자치회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한다) 1명
  3. 감사 2명 이내(단, 운영진회의 출석은 필요에 따른다.)
  4. 간사 1명
  5. 분과별 분과위원장 1명
  6. 분과별 분과 총무 1명

### 제13조(운영진 선출)

- ①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회의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 선출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단독 후보인 경우 무기명 찬반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 시 선출한다.
- ② 간사는 자치회장이 1명을 선임하며,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자원봉사자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분과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단독 후보의 경우 무기명 찬반 투표를 하여 과반 득표자를 선출한다.
- ④ 분과 총무는 해당 분과 자치위원 중에서 1명을 선임 또는 호선한다.

### 제14조(운영진 임무)

-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분과위원회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는 분과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고 마을공동사업을 수행하며, 분과총무를 선임할 수 있다. 분과위원장 부재 시 분과총무가 분과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 ④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보고와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회의록으로 보고하며, 예산 및 회계 등의 출납과 관리 등 주민자치회 실무전반을 수행한다.
- ⑤ 감사는 주민자치회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반기의 다음달 20일 이내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개한다.
- ⑥ 분과 총무는 분과회의 결정사항과 분과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 제15조(궐위와 후임선출)

- ① 자치회장, 운영진 궐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치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라 신임 자치회장 선출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2. 자치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이면 분과장 중 연장자가 남은 임기동안 자치부회장직을 수행한다.
  3. 감사와 분과위원장 궐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라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 제16조(분과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의 활동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수와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자치회관 운영 분과는 필수로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분과위원장은 총무를 호선 또는 선임한다.
- ④ 각 분과는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 1. 해당 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 2. 행정사무 위·수탁 발굴
  - 3. 마을 공동사업 수행

### 제17조(회의)

- ① 주민자치회는 회무·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 1. 주민총회
  - 2. 정기회의
  - 3. 임시회의
  - 4. 운영진회의
  - 5. 분과회의
  - 6. 민관협력회의
- ② 주민자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단, 참관인의 발언권은 제한한다.

### 제18조(주민총회)

-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 ②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17세 이상의 주민(신사2동 거주, 사업자, 단체소속 등 생활주민 포함)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 주민의 0.5%(서면 투표 등 사전투표 포함) 이상으로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 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 ⑥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입주자대표회의 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 제19조(정기회의)

- ①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정기회의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위 ①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운영세척 및 세척 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 3.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 4. 운영진의 선출 및 해임, 위원의 위촉 해제 요구
  - 5.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6.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 7. 운영진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 8.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 9.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제20조(운영진회의)

- ① 운영진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개최한다.
- ② 주민자치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운영진회의는 세칙 제12조에 따른 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 제21조(분과회의)

-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월1회 이상 개최한다.
- ② 분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기회의 개최 전 운영회의에 부의한다.
- ③ 분과회의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분과원을 정원으로 매월 정기회의 이전에 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인 분과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 ④ 분과에서 결정한 사항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운영진회의에 부의한다.
- ⑤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분과원 등의 경우 정기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은 1회, 3분으로 제한한다.
- ⑥ 분과 활동은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간사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석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 제22조(주민설명회)

-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 ②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설명회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23조(회의 의결)

- ① 위원은 자치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 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세칙변경(제정·개정·폐지)
  2. 위원의 위촉 해제 요구
  3. 주민자치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4. 법령위반 사항 및 의결 실행 불가 사유 발생 시 재의결
  5. 운영진의 위촉 및 해임
- ④ 위원이 회의 참석 불가할 시,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위임받은 위원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단 1인 초과 위임은 불과하다.
- ⑤ 대면회의가 불가할 경우 서면결의 등을 통한 비대면 의사표시로 의결할 수 있다.

## 제24조(자치계획 수립)

- ① 운영진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11월 말에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 ②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 ③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④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정기회의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25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 ① 주민자치회에서 작성 및 수·발신 공문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3. 문서접수 대장
  4. 문서등록 대장
  5. 각종 회계장부
  6. 사업계획서
  7.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8. 위원 위·해촉 대장
  9.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서류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

## 제26조(직인)

-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
- ② 직인은 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3 장 자치회관의 운영

## 제27조(자치회관 운영 원칙)

- ①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회관 운영 분과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주민들이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③[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4조 내지 제 14조, 같은 조례시행 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 제 4 장 재정 및 예산 관리

### 제28조(사업비 집행·공개)

- ①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29조(재정)

-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으로 총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3.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4. 수탁금은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 받은 사업 예산
  5.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후원한 예산

### 제30조(회계 및 지출)

-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간사가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재정지출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은 선 집행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1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제32조(감사수감)

- ① 자치회장은 위탁받은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해당 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② 자치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다.

## 별첨1.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제 2 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 제4조(설치)

-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 제6조(정원)

위원의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 제 3 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 제7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직능·교육·문화·예술·그 밖의 지역단체 추천자 3명 이내
- ③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선정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8조(위원의 자격)

-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②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임기 내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위촉)

-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제6항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각 호별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 추첨한다.
  - 1. 정원의 100분의 60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 2. 정원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결원의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가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⑦ 동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⑧ 해당 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 대표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 ⑨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첨 없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임하는 위원은 임기 중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정한다.

### 제11조(위원의 대우)

- ① 위원과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에게는 은평구 지역소식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지역신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 2. 제18조에 해당하는 회의 및 활동 참석
  -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각종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다하지 않은 경우
-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4 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 및 부회장을 재선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전임 회장 및 부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5조(감사)

-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

-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 또는 호선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의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분과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 제18조(회의)

-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 또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⑥ 그 밖의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주민총회)

-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 2. 자치계획의 결정
  - 3.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제한원사업의 제안, 선정
  - 4.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제20조(주민자치협의회)

- ①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 5 장 자치계획

##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보고 및 결정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해야 한다.
-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 ⑥ 자치계획 실행과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및 수탁업무 추진계획
3. 자치회관 운영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 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제 6 장 자치회관

## 제23조(설치 등)

- ①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자치회관의 동별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다만, 갈현제1동과 응암제1동은 ○○동문화의집으로 한다.

## 제24조(기능)

-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 제25조(시설 및 프로그램)

-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26조(운영)

-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운영비와 시상금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제2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해당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자원봉사자)

-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제29조(강사)

-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제30조(사용료 등)

-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의한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2와 같다.
- ⑥ 사용료 등의 반환은 별표3와 같이 한다.
- ⑦ 제2항에 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⑧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 제31조(이용 등)

-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주민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32조(주민참여)

-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3조(수당)

-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4조(보고)

- ①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동장은 제3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 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공간 지원 및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 제 8 장 보칙

### 제37조(감독)

-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38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 제3조(주민자치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참여예산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참여예산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및 재산 등을 승계한다.

## 제4조(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민자치협의회로 본다.

## 제5조(자치회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은 제23조에 따른 자치회관으로 본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마을 신사2동 !

---

## 2022년 신사2동 주민자치회 자치활동 결과 보고서

---

통 권 제02호

발행일 2023년 1월 31일

발행처 신사2동 주민자치회